

#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44호
의결 년월일	2006. 10. 19 (제131회)

제안년월일 : 2006. 10. 4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□ 제안이유

-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사전검토 보고와 소속 위원의 충분한 의안검토시간 확보 및 풍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졸속적인 의안처리를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실시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의안의 상정시기를 회기 개시 7일전까지로 확대 조정하여 해당위원회 의안심사 검토 및 처리의 신중을 기하도록 함.  
(안 제20조의5제1항)

##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5제1항중 “4일전까지”를 “7일전까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